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 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서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그 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추정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이 지나 재심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고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소제기 역시 부적법하다.

판결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의 남편인 소외 망 김○○가 1995. 5. 8.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피고가 같은 해 9. 13.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1996. 11. 1. 선고, 95구 26928 판결
- 판시사항 :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어 1995. 5. 1 부터 시행된 것) 제89조, 제90조, 제94조 제2항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 주 문 :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가. 살피건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은 1995. 5. 5. 소외 ○○건설주식회사에 콘크리트공으로 고용되어 석문지구 간척농지개발 사업 현장에서 도로경계석 설치작업을 하었는데, 같은 달 8일 위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평탄작업을 하던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시 30분경 사망하였고, 그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추정되었다.

(2) 원고는 1995. 8. 29.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9. 13.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1995. 9.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달 22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1995. 10.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서 정본을 서울 영등포우체국 접수번호 189461호 보통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동 ○호로 송부하였다.

(5) 원고는 위 심사청구를 하였을 당시부터 위 아파트 ○동 ○호에 자부인 소외 강

○○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1995. 10. 23. 서울 노원우체국 소속집배원인 소외 문○○이 위 결정서 정본을 위 아파트 ○동 경비원인 소외 이○○에게 교부하였다.

(6) 원고는 이로부터 약 4개월 후인 1996. 3. 2.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재심사 도중인 같은 해 4. 11. 위 어○○이 위 아파트 ○동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동 거주자들에게 송부되는 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는 반드시 그 거주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거주자가 4내지 5일 동안 출타 중이면 그 우편물을 즉시 반송시키고 있는데, 원고에게 송부된 위 결정서 정본 역시 이를 교부받은 1995. 10. 23.부터 3일 이내에는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고, 또한 원고의 자부에게 확인한 결과 같은 달 25일 위 결정서 정본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가 위 어○○ 명의로 작성되어 이 확인서가 위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7) 위 심사위원회는 위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1996. 4.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8)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어 1995. 5. 1. 부터 시행된 것) 제89조와 제90조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서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그 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추정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이 지나 재심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고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소제기 역시 부적법하다.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 제94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고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 결정서 정본이 원고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결정이 있음을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고).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1996. 3. 2.에 한 것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역시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